「봉곡도서관·선산도서관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가. 봉곡도서관·선산도서관의 위탁기간 만료(2026. 12. 31.)에 따라 그간의 위탁운영 성과와 수탁기관의 수행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자 함.

나. 도서관 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 수탁기관인 구미도시공사와 재계약 하고자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6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사 무 명 : 봉곡도서관·선산도서관 관리 운영

나. 추진근거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
2)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

3)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22조 및 제22조의2

4) 「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」 제20조(도서관의 위탁운영)

5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

다. 위탁 사무 내용 : 봉곡도서관·선산도서관 관리 운영 전반

(자료·정보서비스, 문화프로그램 운영, 시설·장비 관리 등)

라. 위탁시설

시 설 명	봉곡도서관	선산도서관
소 재 지	봉곡로15길 54(봉곡동)	선산대로 1400-16(선산읍)
개 관 일	2007. 11. 01.	2007. 11. 01.
시설규모	연면적 4,825㎡ / 지하1층 지상3층	연면적 2,942㎡ / 지하1층 지상3층
주요시설	자료실(유아·어린이·종합), 공동육아나눔터,디지털자료실 등	자료실(어린이·종합), 강의실, 디지털자료실, 노트북실 등
위치도		

마. 위탁기간 : 2027. 1. 1. ~ 2031. 12. 31.(5년)

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연간 약 34억원 ※ 2027년도 예산기준

사. 적정성 검토결과 : 적정 ※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(2026. 9. 9.)

아. 위탁구분 : 재계약

자. 수탁기관 : 구미도시공사(前 구미시설공단, 2009. 5. 1.부터 위탁운영 중)

4. 부서의견

가. 구미도시공사는 봉곡도서관·선산도서관의 위탁 운영을 수행하며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, 자료실·열람실 운영, 독서문화 프로그램 추진, 시설 유지관리 등 위·수탁 협약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, 2026년 위탁 운영 감사(지도·점검) 결과「적정」, 성과평가 결과「탁월」등급으로 평가되어 안정적인 운영 성과가 확인됨.

나. 도서관 특성상 별도의 수익시설을 운영하지 않아 자체수입이 거의 없으며 운영비 대부분을 시 예산에 의존하는 구조이나, 구미도시공사가 다수의 공공시설을 위탁운영하며 안정적인 재무기반을 유지하고 있어 위탁운영에 따른 재정적 리스크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.

다. 이용인원이 2020년 약 15.2만명에서 2025년 약 32.1만명으로 약 2.1배 증가하는 등 지역 내 대표적인 생활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, 행정안전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지방공기업 전체 평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등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만족도가 높음.

라. 종합적으로, 구미도시공사는 그간의 위탁 운영 경험과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봉곡도서관·선산도서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으며, 2026년 감사 및 성과평가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으므로 위·수탁 재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「지방자치법」제117조

2)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

3)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22조 및 제22조의 2

4) 「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」 제20조

5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2027년도 예산편성

다. 성과평가 결과 및 감사결과

6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봉곡도서관·선산도서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를 지속적인 제공을 위해 현 수탁기관인 구미도시공사와 재계약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현 수탁기관인 구미도시공사는 축적된 운영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으며, 두 도서관 모두 성과평가에서 '탁월' 등급을 받고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없는 등 운영성과가 확인되어 도서관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계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- 집행기관에서는 도서관별 이용 수요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자료 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 아울러, 운영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만큼 인건비와 운영 경비 등 예산 산출 및 집행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, 관내 도서관 관리의 일원화 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.